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2797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

판 결 선 고 2023. 8. 18.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64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의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이 소장 부분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분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7. 8.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피고에게 항소장 부분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8. 4. 20.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23. 3. 23.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23. 3. 30. 원심법원에 추후보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